

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 
기획경제위원회  
2020. 09. 08.(화)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# 정 관 변 경 보 고

# 정관 변경 보고

## I. 변경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(2020.07.16.)에 따라 노동이사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「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0.06.04.)에 따라 임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 II. 주요내용

### 1 용어 정비 [제7조, 제10조, 제11조]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사항 반영
  - (기존) 노동자이사제, 노동자이사 → (변경) 노동이사제, 노동이사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7조 (임원)	「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	「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7조(임원), 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해임), 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	<u>노동자이사</u>	<u>노동이사</u>

## 2

### 상임임원 겸직 허가권자 변경 [제8조 제4항]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상임임원 겸직 허가권자 변경
  - (기존)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 → (변경) 임명권자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의3(임직원의 겸직 제한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상근 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## 3

### 노동이사 권한 명시 [제8조 제7항]

-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에 따른 노동이사 권한 명시
  - (기존)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→ (신설)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

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

#### ○ 이사회 안건 제출권
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 하여야 함

#### ○ 정보열람권
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
- 단,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
- 노동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

## 4

### 임원 결격사유 강화 [제11조]

- 「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 강화
  - 기존 선임제한 범위 확대 및 성범죄 경력자, 파면 또는 해임처분 받은 자의 선임제한 신설 등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	1. (신 설) 2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. 파산선고 받은 자 4.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자 5.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.~7. (기재 생략)	1. 미성년자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 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~4. (현행 제6호~제7호와 같음) ※ 세부사항 법령 내용 참고

#### 「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」

- 권고과제 :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·근무제한 강화
  - 과제내용 :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
    -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‘임원’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「지방출자출연법」에 추가

####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III. 시행일 등

- 시행일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- 다른 제규정 개정 :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## 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<p><b>정 관</b></p> <p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<b>제2장 임 원</b></p> 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본 재단이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</u>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⑦ <span style="color: blue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&lt;신 설&gt;</span></p> <p>제9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</p>	<p><b>정 관</b></p> <p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2장 임 원</b></p> 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본 재단이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임명권자의</u>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전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</p>

현 행	변 경(안)
<p>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에 그 임기 중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이 종료된 때에는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②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<u>노동자이사 제외</u>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</p> <p>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p> <p>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p> <p>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7.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</p>	<p>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의 경우에 그 임기 중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이 종료된 때에는 <u>노동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<u>노동이사 제외</u>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미성년자</p> <p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4. <u>노동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</p>

현 행	변 경(안)
<p>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② -- (기재 생략) --  ③ <u>노동자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  1. ~ 2.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2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이사회</b>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업 무</b></p> <p>제22조~제27조의2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회 계</b></p> <p>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해 산</b>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18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&lt;별지&gt; 기본재산 목록 -- (기재 생략) --</p>	<p>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(현행과 같음)  ③ <u>노동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9)</p> <p>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



【붙임】

## 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<p><b>정 관</b></p> <p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<b>제2장 임 원</b></p> 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본 재단이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</u>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⑦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9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</p>	<p><b>정 관</b></p> <p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2장 임 원</b></p> 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본 재단이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. 다만, <u>임명권자의</u>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전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 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</p>

현 행	변 경(안)
<p>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에 그 임기 중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이 종료된 때에는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②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<u>노동자이사 제외</u>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(2018.06.25.삭제)</p> <p>2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</p> <p>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p> <p>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p> <p>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7.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</p>	<p>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의 경우에 그 임기 중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이 종료된 때에는 <u>노동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(<u>노동이사 제외</u>) 및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미성년자</p> <p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} &lt;삭 제&gt;</p> <p>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4. <u>노동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</p>

현 행	변 경(안)
<p>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② -- (기재 생략) --            ③ <u>노동자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1. ~ 2.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2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이사회</b>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업 무</b></p> <p>제22조~제27조의2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회 계</b></p> <p>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해 산</b>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18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&lt;별지&gt; 기본재산 목록 -- (기재 생략) --</p>	<p>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<u>노동이사</u>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9)</p> <p>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